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668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906,860원 및 지방교육세 290,85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92,030원 및 지방교육세 9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 전 2,285㎡(이후 아래와 같이 B 전 989㎡와 C 전 1,296㎡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redacted]시 [redacted]구 D 답 2,245㎡(이하 'D리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6. 9.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redacted]시 [redacted]구 B 전 989㎡(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와 C 전 1,296㎡(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측량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6일 피고에게 토지 분할 등기 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와 같이 토지분할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건축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피고에게 착공신고(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20. 6. 1.(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D리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 9. 5.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재산세 1,906,860원과 지방교육세 290,8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이 사건 건축부지에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지체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착공신고가 늦어졌는바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부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건 나머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201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부지 위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축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착공신고가 늦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가 늦어진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대상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1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